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8. .
국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29일, 김영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2026. 8.2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의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2026. 8.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영진의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 천준호)

수정의결

6. 심사결과

수정의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8.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수정이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에 따른 재송부 요청 대상 직위를 「국회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을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인사청문대상을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이 법 시행(2026. 10. 2.) 전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점에 맞추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앞당기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5조제1항제4호).
- 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에 따른 재송부 요청 대상 직위를 열거하는 대신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3항 등).
- 다.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조정함(안 부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인사청문요청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를 “해당 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국회 에 제출하는 임명 동의안등에는 요청 사유서 또는 의장 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 한 증빙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 ----- ----- ----- ----- ----- -----.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 <u>종합토지세</u> 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4. ----- ----- <u>종합부동산세</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략)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부득이한 사유	③ -----	③ -----

로 제2항의 규정에	-----	-----
의한 기간 이내에	-----	-----
헌법재판소 재판	-----	「국회법」 제65
관·중앙선거관리위	-----	조의2제2항에 따
원회 위원·국무위	-----	른 공직후보자(이
원·방송미디어통신	-----	하 “인사청문요청
위원회 위원장·국	-----	대상자”라 한다)---
가정보원장·공정거	-----	-----
래위원회 위원장·	-----	-----
금융위원회 위원	-----	-----
장·국가인권위원회	-----	-----
위원장·고위공직자	-----	-----
범죄수사처장·국세	-----	-----
청장·검찰총장·경	-----경찰청장	-----
찰청장·합동참모의	· 중대범죄수사청	-----
장·한국은행 총재·	장.-----	-----
특별감찰관·한국방	-----	-----
송공사 사장 또는	-----	-----
방송미디어통신심	-----	-----
의위원회 위원장	-----	-----
(이하 “헌법재판소	-----	-----
재판관등”이라 한	-----	-----.
다)의 후보자에 대	-----	
한 인사청문회를	-----	
마치지 못하여 국	-----	
회가 인사청문경과	-----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u>헌법재판소재판관 등의 후보자</u>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u>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u>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④ ----- ----- <u>-인사청문요청대상자-</u> ----- ----- ----- ----- <u>해당 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u> -----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
---	--	--

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인사청문요청대상자-----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인사청문요청대상자-----

<u>서 국회의 인사청문</u> <u>문을 거치도록 한</u> <u>공직후보자에</u>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 문을 마치지 아니 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 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생략) ② 의장은 <u>국회법</u> <u>제65조의2제2항의</u> <u>규정에 의한 공직</u> <u>후보자에</u> 대한 인 사청문경과가 본회 의에 보고되면 지 체없이 인사청문경 과보고서를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현행과 같음)	----- ----- ----- ----- -----.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인사청</u> <u>문요청대상자</u>----- ----- ----- ----- ----- ----- -----.
--	--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
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은 이를 의장에
게 보고하고 의장
은 인사청문경과보
고서를 대통령·대통
령당선인 또는 대
법원장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
월 2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를 위한 특별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중
“헌법재판소재판
관등”을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로 한

		<u>다.</u> <u>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43조제6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등”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u>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를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인사청문요청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를 “해당 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

보자”를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 <u>종합토지세</u> 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4. ----- --- <u>종합부동산세</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생략)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u>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u>	③ ----- -----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이하 “ <u>인사청문요청대상자</u> ”라 한다)----- ----- ----- ----- -----

<u>· 검찰총장 · 경찰청장 · 합동참</u>	-----
<u>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 · 특별</u>	-----
<u>감찰관 ·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u>	-----
<u>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u>	-----
<u>위원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u>	-----.
<u>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u>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	
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	
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	
통령 ·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	
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④ -----
이내에 <u>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u>	----- <u>인사청문요청대상자</u> ----
<u>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u>	-----
<u>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u>	-----
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	----- <u>해당</u>
장은 <u>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u>	<u>인사청문요청대상자를</u> -----
<u>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u>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	-----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	-----
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 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생략)

②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

-----.

-----인사청문요청 대상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인사청문요청대상자-----

-----.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청문요청대상자-----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 ----- ----- ----- ----- -----.
--	--